

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
번호 2655

제출년월일 : 2015. 6. 5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젊은 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시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매체인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신설을 위한 근거 마련,
- 탄력적인 편집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위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"e-브라보안산" 인터넷 신문 발행 근거 마련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)
- 오프라인매체인 시정소식지 브라보 안산에 대하여 온라인매체를 통하여 젊은 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고객확보 필요성이 증대됨과 더불어, 예산투입 대비 홍보효과를 비교하여 종이신문인 브라보 안산의 디지털신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, 소식지 발행부수 등을 조정하여 절감된 예산을 활용 "e-브라보안산"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- ※ 201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소
- 나.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(안 제7조제1항).
- 위원들과의 수시 의견조율 및 회의개최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홍보업무담당부서장으로 조정

□ 입법예고결과 : 의견있음

- 입법예고 : 2015. 4. 3(금) ~ 4. 23(목) 20일간
- 예고결과 : 의견제출 3건 내용반영
 - 의회사무국(전문위원) [의견3건]

□ 개정조례안 : 불임 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 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 3

-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, 제4조
- 현행 조례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

[붙임 1]

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”를 “안산시 시정소식지 · 인터넷신문 발행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안산시시정소식지”를 “안산시시정소식지와 인터넷 신문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발행인) 안산시시정소식지의 신문형 명칭은 “브라보안산”이라 하며, 인터넷을 통한 방식의 명칭은 “e-브라보안산”이라 하고, 발행인은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한다)이 된다.

제3조 중 “매월 2회 발행한다”를 “매월 2회 발행하고 “e-브라보안산”은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, 제9조제5호 중 “”브라보안산”” 을 “”브라보안산” 및 “e-브라보안산”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0인이내의”를 “10명 이내의”로, “부시장”을 “홍보업무담당부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 중 “2015년 12월 31일”을 “201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”브라보안산”” 을 “”브라보안산” 및 “e-브라보안산””으로, “10명이내의”를 “50명 이내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공보관
입 안 자	실·과장	공보관
	직위·성명	이기용
	담당·팀장	홍보기획계장
	직위·성명	황세하
	담당자 성명·전화	황세하 (행정 2065)

[붙임 2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<u>“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”</u>	제명 <u>“안산시 시정소식지 · 인터넷신문 발행 조례”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안산시시정소식지를</u>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 <u>“안산시시정소식지와 인터넷 신문” 을 ----- ----- ----- .</u>
제2조(명칭 및 발행인) <u>안산시시정소식지의 명칭은 “브라보안산”이라 하고, 발행인은 시장이 된다.</u>	제2조(명칭 및 발행인) <u>안산시시정소식지의 신문형 명칭은 “브라보안산”이라 하며, 인터넷을 통한 방식의 명칭은 “e-브라보안산”이라 하고, 발행인은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한다)이 된다.</u>
제3조(규격 및 발행) <u>“브라보안산”의 규격은 타블로이드(36센치미터 X 24센티미터)로 하고, 매월 2회 발행한다.</u>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.	제3조(규격 및 발행) ----- -----, <u>매월 2회 발행하고 “e-브라보안산”은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 --.
제5조(제재내용) <u>“브라보안산”에는 다음 사항을 제재한다.</u> 1. ~ 4. (생략)	제5조(제재내용) <u>“브라보안산” 및 “e-브라보안산”에는 -----.</u> 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편집위원회) <u>“브라보안산”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고 양질의 소식지를 제작·발행하기 위하여 브라보안선편집위원회(이하 “편집 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	제6조(편집위원회) <u>“브라보안산” 및 “e-브라보안산”에 -----</u> ----- -----.
제7조(구성 등) ① <u>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</u> ② ~ ③ (생략)	제7조(구성 등) ① ----- -- <u>10명 이내의</u> ----- --- <u>홍보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.</u>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2(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)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15년 12월 31일로 한다.</u>	제7조의2(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19년 12월 31일로 --.</u>
제9조(기능)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기타 <u>“브라보안산”의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.</u>	제9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 <u>“브라보안산” 및 “e-브라보안산”的 -----.</u>
제10조(명예기자) ① <u>시장은 “브라보안산”的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10명이내의 일반명예기자를 둔다.</u> ②~⑤ (생략)	제10조(명예기자) ①--- <u>“브라보안산” 및 “e-브라보안산”的 -----</u> ---- <u>50명 이내의 -----.</u> ②~⑤ (현행과 같음)

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65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. 7. 8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종이신문인 “브라보안산”이 필요 이상으로 발행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1회 발행부수의 상한을 설정함.
- 일반명예기자의 정원이 너무 많아 그 정원을 적정한 수로 줄임.

□ 주요골자

- “브라보안산”의 1회 발행부수 상한을 25,000부로 함. (안 제3조)
- 일반명예기자의 정원을 30명 이내로 함.(안 제10조제1항)

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
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(개정안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36센치미터”를 “36센티미터”로, “하고, 매월 2회 발행하고 “e-브라보안산”은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.”를 “하여 매월 2회 발행하되 1회 발행부수는 각 25,000부 이내로 한다.”로 수정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“e-브라보안산”은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.

안 제10조제1항 중 “50명”을 “30명”으로 수정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